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1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조정훈·성일종·서지영

김대식 · 김소희 · 인요한

김예지 · 김용태 · 김민전

최수진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 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 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 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부터"를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 예방) ① 사회관계 망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이용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 2.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

-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 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
	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
	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	의 마련 등) ①
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	
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	
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 <u>로부</u>	<u>또는 사</u>
<u>터</u>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u>으로부터</u>
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

계망서비스 과몰입 예방)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이용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
일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1.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 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 2.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 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 용 여부
-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25. (생략)

④ (생 략)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
 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 자
- 4. ~ 25.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